

방송통신위원회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

□ 법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(비밀 등에 관한 정보)

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
실국(부서)명	비공개 대상정보
공통	○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(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)
	○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(국세징수법 제7조의2제3항)
	○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국가기밀
	○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내용 및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 (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)
	○ 방송통신서비스제공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 중 보호요구가 있는 정보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제1항)
운영지원과	○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(공직자 윤리법 제10조제3항, 제14조 및 제14조의3). 다만,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.
	○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 (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제29조)

□ 법 제9조제1항제2호 관련(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 등에 관한 정보)

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실국(부서)명	비공개 대상정보
공통	○ 국가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
혁신기획담당관	○ 대통령·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주요인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에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
혁신기획담당관 (정보보안팀)	○ 을지연습, 직장예비군·민방위대 편성,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, 대테러대비 전략, 총무계획,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,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
	○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구성도, 정보보호시스템 현황, 정보보호를 위한 자체 내부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·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	○ 방송통신위원회 아키텍처별 현황, 정보시스템 현황, 위원회 직원 개인별 사용자 계정, 정보시스템 유지보수·네트워크·주요서비스 관리 등 주요 시스템 관련 정보 및 세부 IP관리 현황 등 공개될 경우 해킹·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홍보협력담당관	○ 방송통신 관련 통상 정책의 수립·시행 정보, 통상협상에 대한 전략수립, 의제검토, 교섭, 이행 및 통상분쟁 관련 회의 및 협상대응 정보
	○ 방송통신관련 대내외 통상환경·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협상전략과 관련 있는 정보
	○ ITU, APEC 등 방송통신 관련 각종 국제기구의 국제협약·협정의 제·개정 등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
	○ ASEAN 등 다자회의 및 방송통신 양자회담 시 논의된 내용 중 비공개에 합의한 사항
	○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약·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중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방송통신 협력 양해각서 및 국제협약·협정문
방송정책국	○ 방송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소유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
□ 법 제9조제1항제3호 (생명·신체 등에 관한 정보)
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실국(부서)명	비공개 대상정보
운영지원과	○ 청사 방호·방화 계획 및 경비위탁내용 등 공개할 경우 범죄목적의 사용 등으로 인해 상주직원의 생명·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

□ 법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(재판·범죄관련 정보)

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실국(부서)명	비공개 대상정보
공통	○ 방송·통신 사업자 등에 대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
	○ 행정소송·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, 답변서,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
	○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

□ 법 제9조제1항제5호 관련 (일반행정운영 관련 정보)

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실국(부서)명	비공개 대상정보
공통	○ 각종 법령 제·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된 행정기관 내부협의 및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	○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, 근무성적평가, 다면평가 등의 근무성적평정 사항 중 개인의 성과관리에 관한 정보
	○ 의사결정·내부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정책 관련 정보
	○ 법령 제·개정과 관련하여 내부보고 및 입법절차상 작성되는 문건
	○ 방송통신시장 조사 를 위한 계획 및 조사시스템·조사기법에 관한 정보
	○ 기획조사 사건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
	○ 방송통신 분쟁사건 및 이의신청사건과 관련된 분쟁조정·이의신청서, 의견진술서, 재정(안) 등의 정보
	○ 방송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 관련 통계관리 및 동향분석과 관련한 정보
	○ 방송통신사업자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, 금지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계획, 사실조사, 신고서, 조사결과 보고서 등
기획조정관	○ 자체 조직진단·직무분석·총액인건비제 등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
	○ 부처 간 또는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방통위가 주관부처가 아닌 업무의 의견수렴이나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
	○ 주요정책에 대한 자체평가 진행 중인 사항
	○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·평가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의 제·개정 사항
	○ 방송통신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및 속기록

실국(부서)명	비공개 대상정보
운영지원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승진심사 내용, 징계심의·의결 내용 및 진행 중인 보임계획 등 - 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험위원 명단 및 위원별 채점결과 - 민간고용휴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회 소관 물자 구매, 용역 및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,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정보(입찰참가신청서, 첨부서류, 유자격자 명부 등) - 입찰예정자 등 공개 시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- 설계·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(설계·시공 상의 노하우, 건축물의 설계도 등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사 지시 처리사항 중 행정 내부의 심의·협의·조사 등의 자료

□ 법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(개인정보)

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.

- 가.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
- 나.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
- 다.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- 라.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
- 마.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

실국(부서)명	비공개 대상정보
공통	○ 위원회의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, 급여, 학력·직업 등 경력, 재산상황 등의 정보
	○ 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.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. 다만,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
	○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, 학력, 주민등록번호,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. 다만,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
	○ 방송·통신 사업 인·허가시 주주구성자료 중 개인주주 인적사항
혁신기획담당관	○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의 자체 제안 관련 내용
운영지원과	○ 인사교류신청, 채용후보자 명부, 교육훈련 관리, 징계심의·의결·결정통지, 신원조사,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·신용·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. 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

□ 법 제9조제1항제7호 (법인관련 정보)

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.

- 가.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- 나. 위법·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
실국(부서)명	비공개 대상정보
공통	○ 방송·통신 사업 인·허가 및 등록·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해당 사업자의 사업계획서, 각종 영업보고서 등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
	○ 기타 업무상 취득한 방송·통신 사업자의 영업·회계 정보, 기술에 관한 정보 등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
	○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단체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·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
	○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, 신공법, 시공실적,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
	○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개인, 법인, 단체 등)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
	○ 법률자문 관련 내용 및 법무법인(법률사무소)등과의 계약 정보
	○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의 통계관리, 동향분석 및 조사 관련 대상사업자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
	○ 방송통신정책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기관 등이 작성한 법인·단체 등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
	○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와 관련한 대상사업자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